

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30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7. 4. .
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제안근거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

□ 주요내용

1. 목적

-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예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전문민간시설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.

2. 시설현황

- 기본현황

시설명	소재지	주요시설	면적	비 고
평창군공예 전시체험관	진부면 상진부리 1306-3	계	541.3m ²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지면적:1,438m² • 건축면적:415.8m² • 용도:제1종근린생활시설 (소매점:공예품판매장)
		전시.체험실(1층)	390.3m ²	
		교육장(2층)	151.3m ²	

○ 기타 시설현황

- 계약전력 :70kw(일반가정용),상수도:외관 75mm(실내관25mm)
- 시스템 냉난방(전기),단독 오수처리시설(12m³//일)

3. 위탁개요

- 관련 법 : 지방자차법 제104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
- 위탁업체 :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

○ 위탁기간 : 2017. 5월 ~ 2020. 5월 (3년간)

○ 위탁내용

- 공예품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
- 공예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- 공예 단체간 문화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
-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역특화산업 발굴에 관한 사항
-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별도로 위탁하는 업무

○ 위탁조건

- 수탁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일체비용을 수탁자가 부담
- 수익시설(판매장 등)에 대하여 매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

※ 재산감정가 (2017. 02월말 기준)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구조· 품목명	면적 (㎡)	감정평가액(원)		
						대한감정 평가법인	하나감정 평가법인	감정가액 (산술평균)
건물	진부면 경강로 3803	1306 -3	1층	철근콘 크리트	541.3	390,818,600	390,818,600	390,818,600
	사용료				541.3		※부가세별도	3,908,180

4. 관리방안의 장·단점 비교

직영관리	장점	○ 책임감 있는 운영가능
	단점	○ 평창군 조직 인력에 부담 ○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
위탁관리	장점	○ 위탁기관의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 ○ 상대적인 조직 인력 감축 효과 ○ 주민 참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
	단점	○ 위탁기간 만료로 업체 변경 시 계속성 결여
<p>○ 결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예전시체험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인력이 필요하나, 동계올림픽 추진 등을 위하여 평창군 조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은 어려움. - 공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함. 		

5. 향후일정

- '17. 04월 : 수탁자 공모계획 공고
- '17. 04월 : 수탁자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
- '17. 05월 : 수탁자선정 및 위수탁계약 체결
- '17. 05월 : 공예전시체험관 위탁운영

6. 참고자료

-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손익계산서
- 관계법령
 - 지방자치법 제104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
 -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
 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 -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

□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손익계산서

과 목	2016년	2015년
1.매출액	112,487,160	204,115,540
용역매출	112,487,160	204,115,540
2.매출원가		
3.매출총이익(A)	112,487,160	204,115,540
4.판매비와관리비(B)	210,813,204	211,344,012
인건비	70,111,002	74,616,318
공공요금 및 수선비	52,624,598	51,196,360
임차료(기숙사)	16,773,720	24,821,710
실습자재비	47,010,355	32,597,324
운영비	24,293,529	28,112,300
5.영업손실(C)=(A-B)	98,326,044	7,228,472
6.영업외수익(D)		57,360
7.영업외비용(E)	48,000	436,140
8.소득세차감전손실 (F)=(C-D+E)	98,374,044	7,607,252
9.소득세등(G)		
10.순손실(H)=(F-G)	98,374,044	7,607,252

□ 공예관 위치도 및 전경사진



□ 관계 법령

1.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.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3.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4.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5조(위탁운영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효율적인 공예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예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위탁운영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 선정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공예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.

② 공예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물품, 장비 보유현황
2.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
3. 공예·특산품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
4. 공예관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

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에서 선정한다.

제7조(협약체결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인적사항
2. 위탁대상 재산·기간·사무 및 그 내용
3. 사용료·운영비·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수탁자의 의무·안전관리,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

제8조(사용료) ① 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부방법 등은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

③ 공예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,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
제9조(협약취소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·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·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
2. 수탁조건,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
3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0조(양도 및 전대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시설관리 의무)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감독)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공예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